

고향에 기부하여 혜택받고, 내 고향 살리는

고향사랑

기부제



10000



2023. 1. 1. 시행  
**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(2021.10.19.)**

○ **주소지 외의 지자체(기초·광역)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**

-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 (법인은 기부 불가)

○ **기부자에게는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드립니다**

- 지역특산물 등 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 제공

- 10만원 이하 소득세액 전액공제 (10만원 초과시 16.5%)



기부해 주신 **고향사랑기부금**은

## ○ 지역 발전 등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

- 복지, 문화·예술, 지역활성화 사업 등 추진

## ○ 답례품을 활용해 지역경제를 살립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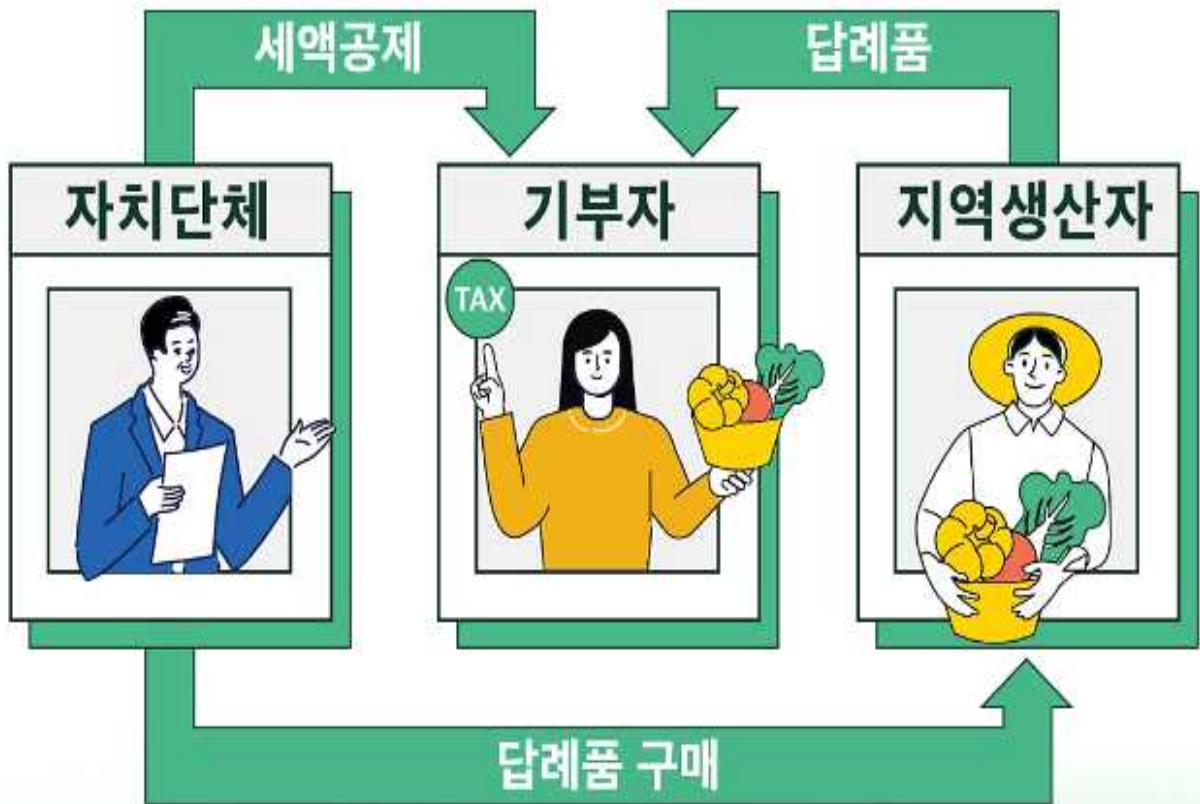
-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판로 확대

- 문화·예술·관광상품 등으로 방문객 증가





# 내 고향 살리는 1석 3조 고향사랑 기부금



지역 균형 발전으로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